



프랑스 PACTE 법안 통과에 따른 생명보험 계약이전 확대

문혜정 연구원

프랑스는 경제개혁의 일환으로 2019년 5월 22일에 PACTE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에 따라 동일 보험회사 내에서는 모든 생명보험 계약에 대해 계약이전이 가능하게 됨. 또한 생명보험계약에서 퇴직저축플랜(PER)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두 배의 세금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새로운 퇴직저축 상품의 저축을 장려함. 프랑스 국민의 74%가 이와 같은 생명보험 계약이전을 확대하는 제도 변경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프랑스 경제개혁의 일환으로 발의된 「기업의 성장 및 전환을 위한 행동계획(이하, 'PACTE'라 함)¹⁾」 법안이 2019년 5월 22일에 통과됨

- PACTE 법안은 프랑스 경제 개혁의 일환으로 기업의 경쟁력 및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되었고 2019년 4월 11일에 채택되어 5월 22일에 공포됨
 - 법안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의 성장을 제약하는 규제완화, 기업혁신을 위한 자금조달 및 비즈니스 보호 방안, 기업의 사회적·환경적 책임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PACTE 제72조는 경제의 자금조달에 생명보험 저축의 기여를 강화하기 위하여 동일한 보험회사 내에서는 모든 생명보험계약에 대해서 새로운 생명보험계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동일한 보험회사 내에서는 과거에 계약한 수익성이 낮은 생명보험계약에서 현재 높은 수익을 제공하는 새로운 생명보험계약으로 세금혜택의 손실 없이 이전할 수 있게 됨
 - 기존에는 2005년부터 시행된 Fourgous 개정안²⁾에 따라 단일투자계약³⁾에서 복수투자계약⁴⁾으로만

1) 2019년 5월 22일 법률 n°2019-486(Plan d'Action pour la Croissance et la Transformation des Entreprises, PACTE)

2) 2005년 7월 26일 법률 n°2005-842(pour la confiance et la modernisation de l'économie)

3) 단일투자계약(Monosupport)은 유로펀드(Fonds en Euros)라고도 불리며, 주로 안정적인 국채와 회사채에 투자하여 약속한 수익을 제공하는 계약을 뜻함

4) 복수투자계약(Multisupports)은 유로펀드뿐만 아니라 기타 다양한 금융자산에도 투자하여 무위험투자와 위험투자의

계약을 이전할 수 있었으나, PACTE 채택 이후 계약의 유형에 관계없이 계약이전이 가능해짐

- 프랑스 상원은 생명보험회사 간 계약이전도 인정하는 내용을 제안하였으나 정부 및 국민의회가 이에 반대해 완전한 계약이전까지는 실현되지 않음
 - 타 보험회사로의 생명보험 계약이전을 인정할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 하는 생명보험회사에 과도한 불안정성과 취약성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함

■ 이와 관련하여 생명보험회사는 상품의 수익률 등 보험계약자가 계약 및 계약 이전을 고려할 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일정 기간 동안 인터넷상에 공개해야 함

- 이미 판매가 종료된 상품을 포함해서 모든 상품에 대한 평균보장수익률, 평균이익분배비율 등 계약자가 새로운 계약으로의 전환을 고려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5년 이상 자사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함
 - 보험계약자는 여러 가지 상품을 비교하여 가장 수익성이 높은 계약으로 기존 계약의 자산 일부 혹은 전체를 이전할 수 있음

■ 또한 생명보험계약에서 퇴직저축계획(Plan Epargne Retraite, 이하, 'PER'이라 함)⁵⁾으로 자산을 이전할 경우 일정 조건하에서 세제혜택을 제공함

- 새로운 퇴직저축 상품인 PER의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서 생명보험계약에서 PER로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기존의 생명보험계약의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두 배로 제공하며⁶⁾, PER로 이전한 자산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⁷⁾도 제공함
 - 보험회사가 매력적인 PER 상품을 신속히 제공하는 것을 장려하는 취지로 2023년 1월 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함
 - 단, 8년 이상 된 생명보험계약을 대상으로 하며 법정 퇴직연령까지 5년 이상 남은 자를 대상으로 함

■ 생명보험계약의 자산 이전이 활성화되면 저수익 계약에 묶여 있던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므로 보험회사의 투자효율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프랑스 국민의 74%(생명보험 가입자의 86%)가 생명보험 계약이전을 확대하는 제도 변경을 지지⁸⁾함에 따라 나은 수익을 제공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의 전환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kiri**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계약을 뜻함

- 5) PER은 기존에 직업에 따라 구분되어 있던 여러 가지 퇴직저축상품(PERP, Madelin, PERCO 등)을 통합한 새로운 퇴직저축 상품으로 2019년 10월 1일부터 출시되었으며, 기존의 퇴직저축 상품들은 2020년 10월 1일에 판매 중지될 예정임
- 6) 기존 생명보험계약의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은 연간 1인당 최대 4,600유로(부부 혹은 공무원 노조의 경우 9,200유로)이며, PER로 자산이전 시 연간 1인당 최대 9,200유로(부부 혹은 공무원 노조의 경우 18,400유로)의 세금감면 혜택이 적용됨
- 7) 생명보험계약에서 PER로 이전한 자산에 대해서 전년도 순소득금액의 10%까지 과세소득에서 공제됨
- 8) Planet-Fintech(2018. 9. 13), "Loi Pacte: 74% des français favorables la transférabilité de l'assurance-vie"